

# 예 산 총 칙

2014년도 본예산 수정 1 차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9,010,711	3,270,321
일반회계	95,989,674	2,879,690
특별회계	13,021,037	390,631
기타특별회계	13,021,037	390,631
의료급여기금	188,266	5,64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5,900	1,37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122,180	33,665
주거환경개선사업	414,356	12,431
주차장	11,087,782	332,633
지하수관리	160,220	4,807
기반시설	2,333	7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33,14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